

생애주기 필수노동자, 그 처우는?



시간제 계약이 대다수인 돌봄노동

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,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으로 ‘돌봄노동’이 사회적 일자리로 제도화된 지 오래다.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사, 아이돌보미 등은 생애주기 필수노동자로 불리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 사회 돌봄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.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걸음마 수준이다. 민주노총이 2022년 돌봄노동조합원 1,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.7%가 계약직이었다. 계약 기간은 ‘6개월~1년’ 미만 60.1%, ‘1~2년 미만’이 35.4% 등으로 짧았다. 여기에 돌봄 요구가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계약이 일반적이었고, 시간당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이라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. 이마저도 이용자가 서비스 수급을 중단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.

연도별 돌봄노동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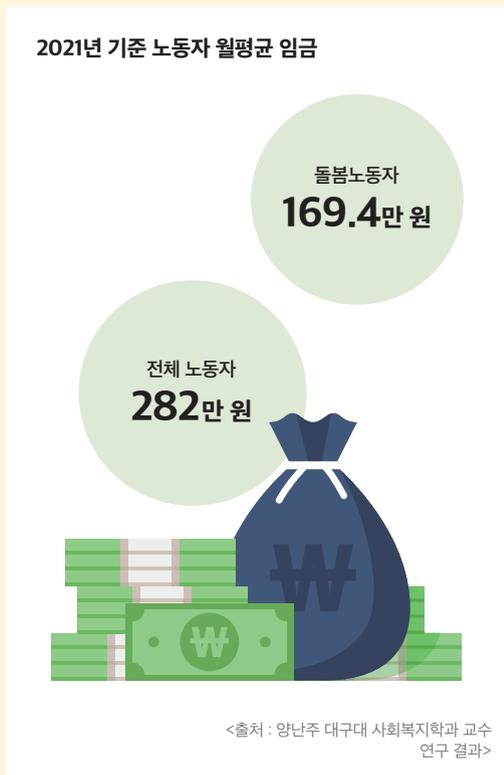
(단위: 천 명)

돌봄노동자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	1,018	1,051	1,094	1,083	1,099	1,099	1,228	1,304
사회복지관련 종사자	396 (38.9%)	420 (39.9%)	438 (40.0%)	420 (38.8%)	420 (38.8%)	429 (36.7%)	436 (35.5%)	473 (36.3%)
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	348 (34.2%)	392 (37.3%)	407 (37.2%)	430 (39.7%)	430 (39.7%)	532 (45.5%)	591 (48.2%)	647 (49.6%)
기타 돌봄·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	55 (5.4%)	56 (5.3%)	63 (5.8%)	75 (6.9%)	75 (6.9%)	72 (6.2%)	74 (6.0%)	78 (5.9%)
가사 및 육아도우미	219 (21.5%)	184 (17.5%)	186 (17.0%)	158 (14.6%)	158 (14.6%)	137 (11.7%)	127 (10.3%)	107 (8.2%)

<출처: 한국노동연구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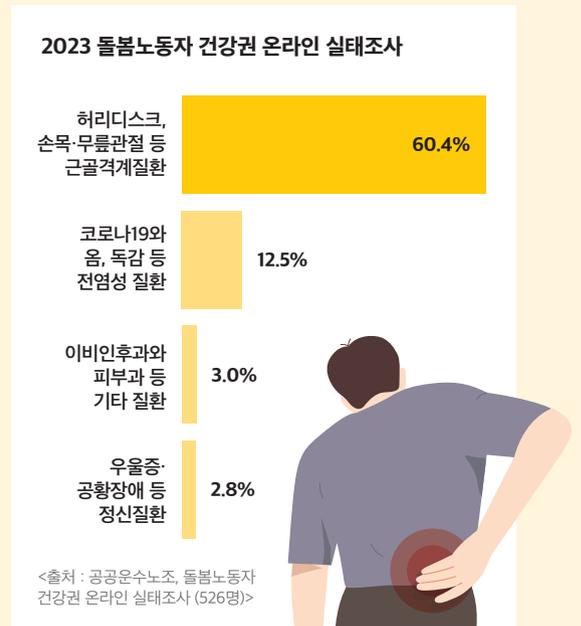
돌봄노동자 월평균 임금 169.4만 원

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지만,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내몰리는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.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.4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(282만 원)의 60%에 불과하다(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 결과). 한편 '2019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'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30.7시간으로 나타났다. 수면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이 대부분이며, 방문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등 시간제 노동은 적정 노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. 게다가 이동·교대·대기 시간 등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.



허리디스크·관절통 달고 사는 돌봄노동자

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요양보호사, 장애인활동지원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을 대상으로 건강권 관련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였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디스크, 손목·무릎관절 통증 등 근골격계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60.4%였다. 이어 코로나19와 옴, 독감 등 전염성 질환이 12.5%,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2.8%,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등 기타 질환이 3.0%였다.



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는 업무 중 이용자 이동·자세 변경 중 사고가 33.9%로 가장 많았고,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5.9%, 출퇴근 중 사고 4.0% 등의 순이었다. 응답자의 29.1%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,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(12.5%), 차별적 대우(9.7%), 공개적인 모욕과 명예훼손(8.3%), 집단따돌림(3.0%) 등의 순이었다. 🐾